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작품 및 미술자료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정원 1명(5급 1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행정 또는 시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2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0호 중 “저작권 인증 및”을 “저작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 단서 중 “9명”을 “7명”으로, “3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3”을 “685”로 하고, 일반직 계 “675”를 “677”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1”을 “172”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2”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

는 학예연구관 “185”를 “18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를 “81”로 한다.

별표 9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95”를 각각 “9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4”를 “95”로 한다.

별표 17 중 1. 제5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제50조제1항”을 “제50조”로,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일반직 계 1 다음에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고, “2. 제5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를 삭제하고, “총계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를 삭제하고,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와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저작권국) ① ~ ③ (생략)	제12조(저작권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u>	10. <u>저작권</u> ----- --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u>9명</u> (행정사무관 3명,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7명</u> -----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산업정책관

제50조(한시정원) ① 방송분야 외
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
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며,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한다.

②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명-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제50조(한시정원) <삭제>

(현행 제2항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시행규칙 부칙
<u>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83</u>		<u>685</u>	+2	
	.		.		.		
	.		.		.		
일반직	계		<u>675</u>		<u>677</u>	+2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 · <u>185</u> · · <u>82</u> · ·	· · <u>186</u> · · <u>81</u> · ·	+1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5	96	+1
일반직 계	95	96	+1
3급 또는 4급 이하	94	95	+1

[별표 17]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제5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u>1. 제50조</u> <u>제1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3</u> <u>년 2월 28</u> <u>일)</u>	<u>1. 제50조</u> <u>관련 한</u> <u>시정원</u> <u>(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9</u> <u>일)</u>	
·	·	·	
·	·	·	
<u>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u>	<u>1</u>	<u><삭 제></u>	-1
2. 제5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u>2. 제50조</u> <u>제2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9</u> <u>일)</u>	<u><삭 제></u>	
<u>총계</u>	<u>1</u>	<u><삭 제></u>	-1
<u>일반직 계</u>	<u>1</u>	<u><삭 제></u>	-1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